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3

제출연월일 : 1999. 1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사유

- 문화재는 한번 멸실되면 복구가 불가능하고 많은 사람이 공유할 소중한 민족유산임을 감안하여 문화재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체제는 유지하되
-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그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민족의 문화유산인 문화재의 실효성 있는 보존·관리와 행정편의 위주로 개인의 재산권 등 과도한 제한을 가하므로써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실효성이 상실된 현행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하고자 함. <각종 신고 및 보고의무 사항 등>

□ 주요골자

-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부동산문화재, 동산문화재 및 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관리상황보고제 및 관리방법 등 지시 규제를 폐지함.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시상황, 문화재 관리·수리 상황보고 의무 등>
- 개인소유 문화재를 매각할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를 도에 우선적으로 매도하도록 하는 의무 등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폐지·정비함. <현상변경 등 허가조건 위반시의 허가 취소>
-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할 의무와 수리시 도의 수리지시 및 전문가의 기술지도를 수용하도록 의무화하던 규제를 폐지함.

- 도지정문화재의 수리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소유자에게 하는 수리정지 또는 재수리 명령을 폐지함.
- 전문분야별로 심도있는 문화재의 연구·조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정원을 15명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함.
- 심의 의결시 과반수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현행제도에서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민주원칙에 반하므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개정함.
-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모두 사망시에도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종목의 지정은 존속토록 개선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사망시 신고의무 폐지함.
-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에 관하여 도지사만이 소유자·관리자 등에 대한 행정명령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시장·군수도 도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권한의 일부를 부여함.
- 문화재 보존·관리의 원형유지 기본원칙 신설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신설함.
- 도지사, 시장·군수는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 취소시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비상시 도지사가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매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개정근거 : 문화재보호법 개정관련 후속조치**

[문화재청 기획 05090-78 ('99. 6. 18)]

☐ **기타 참고자료 : 따로붙임**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충청북도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라 한다)라 함은 도내에 있는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민족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2.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한 것

3. 기념물 :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

가. 사지·고분·패총·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나. 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으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다.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제2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하며, “인정하는 것”을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이 조례에서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도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도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2조의 2”를 “제3조”로 한다.〉

제2장 문화재위원회

제3조 본문중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 문화재의”를 “문화재의”로 한다.

〈현행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복구 명령”을 “복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도지정문화재의 도외 반출허가”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변경 또는 도외 반출의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제한·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의 명령”을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9호 중 “도지정무형문화재 ”를 “무형문화재 ”로 한다.

〈현행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를 “20인이내의”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를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로 한다.

〈현행 “제5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통리하며”를 “총괄하며”로 하며, “소집한다.”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있을 때”를 “있을 때에는”으로 한다.

〈현행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현행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분장심의하기”를 “분장하여 조사·심의하기”로 하며,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본문 “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를 “분과위원회의 업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 제4항을 삭제한다.

〈현행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현행 “제8조 제5항”을 “제9조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2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각분과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수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현행 “제9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 본문중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를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으로 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현행 “제10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위원회에는 ”을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에 각각”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한다.

〈현행 “제11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2조 중 “도소속공무원이”를 “도소속직원이”로 한다.

〈현행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3조 중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공무원 등 관계자”로 한다.

〈현행 “제13조”를 “제14조”로 한다.〉

제3장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제1절 지 정

제14조제1항 중 “지정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구분지정 한다.”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 14조제3항 중 “인정하여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 14조제4항 중 “그 자를 추가로”를 “추가로”로 한다.

<현행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현행 “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

(현행 제15조 본문중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제 16조의 제목 “지정의 고시 및 지정서 교부”를 “지정의 고시 및 통지”로 한다.

제 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구역과 보호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정하였거나 무형문화재의 보유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 16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현행 “제16조”를 “제17조”로 한다.>

제 16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6조의2(지정서 등의 교부) ①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당해 문화재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보유자에게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 2”를 “제18조”로 한다.>

<현행 “제17조”를 “제19조”로 한다.>

제 18조제2항 중 “무형문화재 보유인정자(보유단체 포함)”를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포함)”로 한다.

제 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의 인정이 해제되며,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 18조제4항 중 “고시한 날로부터”를 “고시한 날부터”로 한다.

제 18조제5항 중 “받은 날로부터”를 “받은 날부터”로 한다.

제 1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현행 “제18조”를 “제20조”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정된 문화재는 그 문화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통보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은 그 가지정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치가 없으면 그 가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5조 내지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보의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현행 “제19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문화재자료의 지정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문화재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제2항 중 “확대 지정한다.”를 “확대 지정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를 “제16조 내지 제21조”로 한다.

〈현행 “제20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2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 2(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의 2”를 “제23조”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행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수리 등)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등록을 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수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

<현행 “제27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구역 또는”을 “구역이나”로 한다.

제28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28조제4호 중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를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로 하며,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한다.

<현행 “제28조”를 “제27조”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반출하지 못한다.”를 “반출할 수 없다.”로 하며, 단서중 “반출하고”를 “반출하되”로 하고, “조건으로 하여”를 “조건으로 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문화재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현행 “제29조”를 “제28조”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2항 중 “도지정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를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로 한다.

〈현행 “제32조”를 “제29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제2항을(전수교육) 도지사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제3항을 삭제한다.

〈현행 “제33조”를 “제30조”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도지정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로 하고, “제33조제2항의”를 “제30조의”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도지정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로 한다.

〈현행 “제34조”를 “제31조”로 한다.〉

제3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도지사는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 중 “도지정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로 한다.

〈현행 “제35조”를 “제31조”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제3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제1호·제2호외의 필요한 조치

제3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 “제36조”를 “제33조”로 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신고사항)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한다.

제38조제2호 중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때”를 “소유자를 변경한 때”로 한다.

제38조제3호 중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를 “주소를 변경한 때”로 한다.

제38조제4호 중 “면적 등에 변경이 있을 때”를 “면적 등을 변경한 때”로 한다.

제38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제1호 또는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후 이를 다시 반입한 때

제38조제9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0호를 삭제한다.

〈현행 “제38조”를 “제34조”로 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로 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로 한다.

제39조제1항제4호 중 “도지정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관리 사용토록”을 “관리·사용토록”으로 한다.

〈현행 “제39조”를 “제35조”로 한다.〉

제40조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호로 한다.

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제4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로 한다.

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현행 “제41조”를 “제36조”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도지정문화재로서 그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그 관리·보호 또는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41조의 2”를 “제37조”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제28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호 내지 제4호·제6호 내지 제8호와 제36조의 규정은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

〈현행 “제42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절 공 개 <삭 제>

제43조 중 “이 조례의”를 “이 조례가”로 한다.

〈현행 “제43조”를 “제39조”로 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중 “관리단체가 도지정문화재”를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로 한다.

〈현행 “제49조”를 “제40조”로 한다.〉

제4절 조 사

제4절을 제3절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제1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한다.

〈현행 “제51조”를 “제41조”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한다.

〈현행 “제52조”를 “제42조”로 한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준용) 제41조, 제42조의 규정은 제15조,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 등에 이를 준용한다.

〈현행 “제53조”를 “제43조”로 한다.〉

〈현행 “제54조”를 “제44조”로 한다.〉

제55조제3호 중 “도지정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의”로 한다.

〈현행 “제55조”를 “제45조”로 한다.〉

제5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 2(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5조의 2”를 “제46조”로 한다.〉

〈현행 “제56조”를 “제47조”로 한다.〉

제5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 2(청문) 도지사, 시장·군수는 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의 허가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6조의 2”를 “제47조”로 한다.〉

〈현행 “제57조”를 “제48조”로 한다.〉

제56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 3(비상시의 문화재보호) ①도지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및 가지정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문화재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제1항의 조치 또는 명령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의 3”을 “제49조”로 한다.〉

제56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 4(지원요청) 도지사 또는 제49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의 4”를 “제50조”로 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제명 :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명 :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u>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u>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충청북도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라 한다)라 함은 도내에 있는 문화재로서 <u>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u> 국가지정문화재로 <u>지정되지 아니한</u> 문화재중 도지사가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 전적 · 서적 · 고문서 · 회화 · 조각 · 공예품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u>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u> 2. 무형문화재 : 연극 · 음악 · 무용 · 공예기술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u>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u> 3. 기념물 : 패총 · 고분 · 성지 · 궁지 · 연지 · 요지 ·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경승지 및 동물(서식지 · 번식지 · 도래	제1조(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u>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u> 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충청북도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라 한다)라 함은 도내에 있는 <u>인위적 · 자연적으로 형성된</u> 향토적 · 민족적 유산으로서 <u>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 경관적</u> 가치가 큰 문화재로서 <u>문화재청장이</u> 국가지정문화재로 <u>지정하지 아니한</u> 문화재중 도지사가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 전적 · 서적 · 고문서 · 회화 · 조각 ·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u>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u>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u>고고자료로</u>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2. 무형문화재 : 연극 · 음악 · 무용 ·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u>역사적 · 예술적 또는 학술적</u>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3. 기념물 :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 가. 사지 · 고분 · 패총 · 성지 · 궁지 · 요지 ·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

현	행	개	정	안
				지를 포함한다)·식물(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다.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 행사 등에 관한 풍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그 밖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중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 행사 등에 관한 풍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그 밖의 물건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②이 조례에서 충청북도문화재자료(이하 "문화재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지사가 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조례에서 충청북도문화재자료(이하 "문화재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③이 조례에서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도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도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신 설>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제2장 문화재위원회 제3조(설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호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5. 도지정문화재의 도외 반출허가 6.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환경보전을 위한 제한·금지 또는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의 명령 7.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입 8.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 및 장학생 대상자 심의 10. 기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2장 문화재위원회 제4조(설치)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사항)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5.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변경 또는 도외 반출의 허가에 관한 사항 6.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에 관한 사항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 및 장학생 대상자 심의 10.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결정족수)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제4조에 규정한 사항을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제2분과위원회·제3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의 분장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제4조에 규정한 사항을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제2분과위원회·제3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업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	행	개	정	안
1. 제1분과위원회 :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재중 건조물과 동조동향 제3호의 기념물중 사적지 및 동조동향 제4호의 민속자료중 가옥(집단 민속자료구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삭 제>	:	규칙으로 정함
2. 제2분과위원회 :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의 유형문화재중(건조물은 제외한다) 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에 관한 사항	<삭 제>	:	규칙으로 정함
3. 제3분과위원회 :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의 무형문화재·동조동향제3호의 기념물(사적지는 제외한다) 및 동조동향제4호의 민속자료(가옥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삭 제>	:	규칙으로 정함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정원과 배치는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	규칙으로 정함
④각분과위원회는	그 호선에 의하여 분과위원장을 선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삭 제>	:	규칙으로 정함
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현행과 같음)		
제9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15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20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수는 도지사가 정한다.	
②전문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전문위원은	사계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u>위원의 품위손상등</u>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u>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u>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간사등)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도지사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간사등) ①(현행과 같음) ②간사와 서기는 도지사가 그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③(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과 여비) <u>도소속공무원이 아닌</u> 위원과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과 여비) <u>도소속직원이 아닌</u> 위원과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와 각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u>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와 각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공무원 등 관계자를</u>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3장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제1절 지 정 제14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①도지사는 제2조의 문화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로 <u>지정한다</u>. ②도지정문화재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u>구분 지정한다</u>. ③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u>인정하여야 한다</u>.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보유자외에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u>그 자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u>. 제15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 지정) 도지사는 <u>제14조의</u>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의 보호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지정의 고시 및 지정서 교부) ①도지사는 <u>제14조의</u>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구역과 보호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제1절 지 정 제15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①도지사는 제2조의 문화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로 <u>지정할 수 있다</u>. ②도지정문화재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u>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u>. ③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u>인정할 수 있다</u>.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보유자 외에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u>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u>. 제16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도지사는 <u>제15조의</u>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의 보호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도지사는 <u>제15조의</u> 규정에 의하여 <u>도지정문화재</u> 및 문화재자료(보호구역과 보호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u>치정하였거나</u>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u>지체없이</u>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②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보유자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그 보유자에게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u><신설></u> 제17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은 도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18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가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무형문화재 <u>보유인정자</u>(보유단체 포함)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당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u><삭제></u>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정서 등의 교부) ①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당해 문화재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보유자에게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 시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20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현행과 같음) ②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u>보유자</u>(보유단체 포함)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③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의 <u>인정이</u>,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전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정이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도지사는 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해제의 효력은 도보에 <u>고시한 날로부터</u> 발생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해제통지를 받은 <u>날로부터</u> 30일 이내에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의 <u>인정이 해제되며</u>,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해제의 효력은 도보에 <u>고시한 날부터</u> 발생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해제통지를 받은 <u>날부터</u> 30일 이내에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국가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9조 (가지정)	①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u>그 지정이 긴급하고</u>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으며 <u>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보호물의 설치를</u> 할 수 있다.	제21조 (가지정)	①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u>그 지정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u>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가지정 취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정된 문화재는 가지정후 6개월 이내에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 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정된 문화재는 그 문화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통보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은 그 가지정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그 가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제15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보의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20조 (문화재자료의 지정)	①문화재자료는 제2조의 문화재중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중에서 원형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을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②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인멸될 우려가 있는 1945년 이전에 건립된 건조물과 오래 되지않은 건조물이라도 향후 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을 확대 지정한다. ③문화재자료는 유형별로 나누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지정한다. ④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문화재자료 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문화재자료의 지정)	①문화재자료	의 지정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문화재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②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인멸될 우려가 있는 1945년 이전에 건립된 건조물과 오래 되지않은 건조물이라도 향후 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을 확대 지정할 수 있다. ③(현행과 같음) ④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문화재자료 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절 관리 및 보호 <u><신 설></u> 제21조(문화재안내표지의 설치) ①도지정 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향토문화의 정확한 보급과 선양을 위하여 안내표지를 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문화재안내표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안내판 : 당해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내용을 관람자에게 설명하는 표지판 2. 경고판 :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가 집중되어 있는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문화재의 관리·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관람자에게 알리기 위한 표지판 제22조(관리방법의 지시) 도지사는 도지정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23조(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유자에 대하여 그 문화재의 관리·보호에 관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23조(소유자등의 관리의무와 관리자) ① <u>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당해 문화재를 선량한 주의로써 이를 관리·보호하여야 한다.</u> <u>②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u> <u>③제22조 및 제1항의 규정은 관리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u>	<삭 제>
제2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공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도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지정하고자 하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당해 관리단체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④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⑥제17조, 제23조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관리단체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5조(자치단체에 의한 관리등) ①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또는 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화재·도난·훼손·멸실등의 예방 기타 그 보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접 관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원인이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26조(수리 등) ①도지정문화재의 수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관리 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하여야 한다. ②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④(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⑥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삭 제> 제25조(수리등)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 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 단체를 말한다)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등록을 한 문화재 수리 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 수리업자로 하여금 수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문화재의 보존

현행	개정안
의하여 문화재관리국에 등록을 한 문화재 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수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수리가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그 수리의 중지 또는 재수리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기록의 작성·보존) ①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중 중요한 것에 대하여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허가사항) 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삭 제> 3. 도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26조(기록의 작성·보존)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27조(허가사항)(현행과 같음) 1.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현행 제3호와 같음)

현행	개정안
4. 도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제29조(반출금지) ①도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는 도의 관할구역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문화재의 전시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고 그 반출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지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도외반출을 허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u>문화재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허가취소) 도지사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유로 도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관리등의 위탁 또는 기술지도) ①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3. 도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제28조(반출금지) ①도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는 도의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1년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u>도지사의</u>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현행과 같음) ③도지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도외반출을 허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u>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바에 의하여 그 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의 수리만을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기술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또는 수리의 위탁을 받았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문화재의 관리 또는 수리의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2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도지사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지정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그 보유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현행과 같음) ②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그 보유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④(현행과 같음)
제33조(전수교육) ①도지사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정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실시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30조(전수교육) 도지사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해당 무형문화재

현	행	개	정	안
	②도지사는 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각각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은 자와 받고 있는 자를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자에게 이수증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의 전수교육을 3년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③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제2항에 의하여 이수증을 교부한 상황을 교부후 15일이내에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34조 (전수교육보조자)	①도지사는 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31조 (전수교육보조자)	①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중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수교육을 보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수교육을 보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 (전수장학생)	①도지사는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장학생을 지급할 수 있는 도지정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32조 (전수장학생)	①도지사는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정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자중에서 그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종목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자중에서 그 무형문화재 보유자	

현행	개정안
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기타의 사유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전수실적이 불량한 때 ④도지사는 전수장학생이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전수교육기간·추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③(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제36조(행정명령) ①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자의 선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관리자의 해임 또는 교체 3.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기타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제33조(행정명령)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삭 제>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4. 기타 도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상 필요한 조치 ②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제37조 <삭제> 제38조(신고사항) 도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하며, 제10호의 경우에는 그 동거하는 가족중 1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도지정문화재를 매도하고자 하거나 소유자의 변경이 있을 때 3.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을 때	3.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제1호·제2호의 필요한 조치 ②(현행과 같음)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신고사항)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도지정문화재를 매도하고자 하거나 소유자를 변경한 때 3.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때

현행	개정안
4. 도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에 변경이 있을 때 5.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 6. 도지정문화재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7. 제28조제1호·제2호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거나 이를 다시 반입한 때 8. 제2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기타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9. 제3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의한 명령을 받고 그 문화재의 수리, 시설의 설치, 장애물 제거 또는 기타의 조치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10. 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	4. 도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을 변경한 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제27조제1호 또는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때 8.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기타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삭 제> <삭 제>
제39조(보조금) ①도지사는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한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도지사가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문화재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제35조(보조금)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도지사가 도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도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또는 군수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토록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0조(보조금의 반환)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제39조제1항 각호의 교부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2. 보조금의 교부 목적 대상물의 수리, 기타 공사의 허가가 취소된 때 3. 보조금의 교부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5. 보조금에 의하여 수리 기타 공사를 시행한 도지정문화재를 유상으로 양도한 때 제41조(손실보상)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도에 의한 관리로 손실을 받은 자 2. 도지사가 문화재의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신 설>	③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또는 군수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토록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36조(손실 보상) (현행과 같음) <삭 제> 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42조(준용) 제22조, 제23조, 제28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29조, 제36조제1항제1호, 제37조, 제38조, 제41조의 규정은 <u>도지정문화재로</u>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 제3절 공 개 제43조(공개) 도지정문화재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4조(부동산에 속하는 도지정문화재의 공개) ① 도지정문화재중 부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기념물(동물자체는 제외한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교의식이나 문화재의 보존·관리상 그 공개가 부적당한 때 2.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 3. 도지사가 당해 문화재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공개의 제한 또는 중지를 명한 때	제37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도지정문화재로서 그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그 관리·보호 또는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준용) 제27조, 제28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호 내지 제4호·제6호 내지 제8호와 제36조의 규정은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 <u><삭제></u> 제39조(공개) 도지정문화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u><삭제></u>

현	행	개	정	안
				②도지사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승인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동산에 속하는 도지정문화재의 공개) ①도지정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도지사로부터 다음 각호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문화재를 출품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박물관 기타 장소에서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한 공개를 위한 출품, 이 경우 도지사는 3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한 공개조치 ② 제1항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정문화재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공중의 관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그 문화재를 보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공개하거나 타인이 주최하는 전람회등에 출품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출품을 받을 전람회등의 주최기관은 미리 전람회의 개최 취지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당해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삭 제>

현행	개정안
제46조(도지정무형문화재의 공개)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이상 그 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7조(공개비용) 제45조제1항각호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출품 또는 공개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액을 도가 부담한다. 다만, 그 공개 또는 출품으로 인하여 수입이 있는 때에는 그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부담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48조(급여 및 보상금) ①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문화재를 출품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에서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②제45조제1항의 명령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를 출품하거나 공개하는 중에 문화재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는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9조(관람료의 징수) ①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도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40조(관람료의 징수) ①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③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4절 조 사 제50조(관리상황의 보고) 도지사는 도지정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문화재의 현상·수리·관리·환경보전 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기타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측량·발굴·장애물의 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3절 조 사 <삭 제> 제41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으로서 하여금 도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기타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조사 하게 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도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제52조(조사요청) ①도지정문화재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요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지정문화재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준용)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제14조, 제15조 및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 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5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그 새소유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행하는 명령·지시·기타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④(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제42조(조사요청)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조사요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도지정문화재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준용) 제41조, 제42조의 규정은 제15조,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 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4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제1항의 규정은 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55조(표창)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발견·신고한 매장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경우에 매장문화재를 발견·신고한 자 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도난·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도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이외의 자로서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4.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보호·공개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보호 또는 공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된 자 <신설> 제56조(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육성) 도지사는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신설>	②(현행과 같음) 제45조(표창)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이외의 자로서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4. (현행과 같음)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육성) (현행과 같음) 제48조(청문) 도지사, 시장·군수는 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

현행	개정안
<신설>	한 때 그 허가취소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 ①도지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및 가지정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문화재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제1항의 조치 또는 명령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제50조(지원요청) 도지사는 제49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0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충청북도문화조례(충청북도조례 제306호 1968. 11. 9)는 이를 폐지한다.		②(폐지조례)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조례(충청북도 조례 제306호 1968. 11. 9)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71. 7.13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 7.13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3.28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3.28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8. 1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8. 1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0.25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10.25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3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23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3. 9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3. 9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지방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충청북도지방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		
부 칙(1987. 3. 6 조례 제1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3. 6 조례 제1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6. 17 조례 제1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 6.17 조례 제1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0. 7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0. 7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8.14 조례 제2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8.14 조례 제2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 조례 제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련 법 규 발 취

[문화재보호법]

第55條 (市·道指定文化財의 指定 등) ①市·道知事は 그 管轄區域안에 있는 文化財로서 國家指定文化財로 指定되지 아니한 文化財중 保存價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市·道指定文化財로 指定할 수 있다.

② 市·道知事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되지 아니한 文化財중 郷土 文化保存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文化財資料로 指定할 수 있다.

③ 文化財廳長은 文化財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文化財에 대하여 市·道知事에게 市·道指定文化財 또는 文化財資料(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指定·保存할 것을 勸告할 수 있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指定文化財 및 文化財資料를 指定할 때에는 당해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の 指定임을 알 수 있도록 “指定” 앞에 特別市 또는 당해 廣域市나 道の 名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市·道指定文化財 및 文化財資料의 指定 및 解除節次, 管理, 보호·육성, 公開 및 文化財에 관한 諮問機關의 設置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58條 (準用規定) ①第18條第2項·第5項, 第21條제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市·道指定文化財 및 文化財資料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第18條, 第12條제1項 및 第4項, 第16條, 第20條, 第25條, 第27條, 第33條, 第39條 및 第41條의 規定은 市·道指定文化財 및 文化財資料에 관하여 이를 準用하되, 이 경우 “文化財廳長”은 “市·道知事”로,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본다.

第18條：保護物 또는 保護區域의 指定

第12條：指定 또는 認定의 解除

第16條：管理團體에 의한 管理

第18條：修理 등

第20條：許可事項

第21條：輸出 등의 금지

第25條：行政命令

第27條：申告事項

第33條：公開

第39條：觀覽料의 徵收

第41條：職權에 의한 調査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 요지

현행	개정안	요지	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문화재보호조례의 목적을 구체화	• 개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 문화재에 관한 정의를 구체화 :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를 추가 ○ 보호구역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	• 개정 • 신설
(신설)	제3조(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	○ 문화재 보존·관리의 원형유지 기본원칙 신설	• 신설
제3조(문화재 위원회 설치)	제4조(문화재 위원회 설치)	○ 문화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위상 강화	• 개정
제4조(심의사항)	제5조(심의사항)	○ 문화재자료의 현상변경 및 도외반출시 허가 사항 추가 ○ “관한 명령”을 “관한 사항”으로 수정 ○ “도지정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로 수정	• 개정 • 개정 • 자구수정
제5조(구성)	제6조(구성)	○ 위원회 구성 일부 중복 ○ 위촉대상자에 대한 명시	• 개정 • 개정
제6조(위원장 과 부위원장)	제7조(위원장 과 부위원장)	○ “통리”를 “총괄”로 수정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됨을 명시	• 자구수정 • 개정
제7조(의결정족수)	제8조(의결정족수)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 위원장에 결정권을 주는 것은 민주원칙에 반하므로 과반수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이 타당	• 자구수정 • 개정
제8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 심의 ○ 분장업무는 규칙에서 정함	• 개정 • 삭제
제9조(전문위원)	제10조(전문위원)	○ 전문분야별로 심도있는 연구, 조사를 위하여 정원을 15명이내에서 20명이내로 증원함. ○ 전문위원 위촉 대상자는 사계의 전문가 중에서 20인 이내를 위촉하며, 분과위원회별 배속은 도지사가 정함.	• 개정 • 개정

현행	개정안	요지	비고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은 도지사의 권한	• 개정
제11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수정	• 자구수정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도소속공무원”을 “도소속직원”으로 수정	• 자구수정
제13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제14조(관계자의 의견청취)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를 “공무원 등 관계자”로 수정	• 자구수정
제14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제15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종목 지정시에도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인정하여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로 수정 ○“그자를 추가로”를 “추가로”로 수정	• 자구수정 • 자구수정
제15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지정)	제16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지정)	○문화재의 보호상 필요한 보호구역 및 보호물 지정	• 현행과 같음
제16조(지정의 고시 및 지정서 교부)	제17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도보 고시 및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 ○지정서·인정서의 교부는 제18조에서 정함	• 현행과 같음 • 삭제
(신설)	제18조(지정서 등의 교부)	○소유자에게 지정서 교부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인정서의 교부	• 신설 • 신설
제17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 시기)	제19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 시기)	○지정 및 인정의 효력 발생시기는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	• 현행과 같음
제18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제20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모두 사망시에도 종목의 지정은 존속토록 개선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도지정문화재는 해제된 것으로 규정 신설	• 개정 • 신설

현행	개정안	요지	비고
제19조(가지정)	제21조(가지정)	○ 가지정 통보받은 날부터 효력 발생토록 함 ○ 준용규정에서 도지정문화재 지정규정을 준용하되 도보의 고시는 하지않음	• 개정 • 신설
제20조(문화재자료의 지정)	제22조(문화재자료의 지정)	○ 원형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 개정
(신설)	제23조(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의 수립)	○ 도지사의 지침에 의거 시장, 군수는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하도록 함	• 신설
제21조(문화재 안내표지의 설치)	(삭제)	○ 소유자의 도지정문화재 안내 표지 설치 의무 폐지	• 삭제
제22조(관리방법의지시)	(삭제)	○ 도지정문화재 소유자 등에 대한 도의 문화재 관리·보호상 필요한 강제적 지시 폐지	• 삭제
제23조(소유자등의 관리의무와 관리자)	(삭제)	○ 도지정문화재 소유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및 관리자 선임규정 폐지	• 삭제
제2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제2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준용규정 조문정리	• 개정
제25조(자치단체에 의한 관리 등)	(삭제)	○ 도지정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시 도의 직접관리 및 조치권 폐지	• 삭제
제26조(수리 등)	제25조(수리 등)	○ 도지정문화재 소유자 등의 수리의무 폐지 ○ 수리가 문화재보존관리에 지장초래시 소유자 등에 대한 수리정지 등 강제명령 폐지 ○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청”으로 수정	• 삭제 • 삭제 • 자구수정

현행	개정안	요지	비고
제27조(기록의 작성·보존)	제26조(기록의 작성·보존)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상 필요한 사항의 기록 작성	• 현행과 같음
제28조(허가사항)	제27조(허가사항)	○변경이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허가 사항으로 규정	• 개정
제29조(반출금지)	제28조(반출금지)	○“반출하지 못한다”를 “반출할 수 없다”로 하고, “반출하고”를 “반출하되”로 수정 ○반출시 도지사의 허가 규정을 둠	• 자구수정 • 개정
제30조(허가취소)	(삭제)	○현상변경 등 허가조건 위반시의 허가취소 폐지	• 삭제
제31조(관리 등의 위탁 또는 기술지도)	(삭제)	○도지정문화재 소유자가 도에 대해 관리·수리위탁 및 기술지도 요청제도 폐지	• 삭제
제32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제29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도지정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로 수정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수교육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자구수정 • 개정
제33조(전수교육)	제30조(전수교육)	○전수교육 실시상황보고 및 전수교육 실시 상황 지도, 감독 폐지 ○전수교육을 3년이상 받은 자에 대한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삭제 • 개정
제34조(전수교육보조자)	제31조(전수교육보조자)	○“도지정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로 수정 ○조문정리	• 자구수정 • 개정
제35조(전수장학생)	제32조(전수장학생)	○“도지정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로 수정 ○조문정리	• 자구수정 • 개정

현행	개정안	요지	비고
제36조(행정 명령)	제33조(행정 명령)	○ 시장·군수도 소유자 등에 보호·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한 경우 도지사에 보고토록 함. ○ 조문정리	• 개정 • 삭제
제37조(삭제)			
제38조(신고 사항)	제34조(신고 사항)	○ 조문정리 ○ 수리명령을 받은 자의 착수·완료시 신고의 및 무형문화재보유자 사망시 신고의무 폐지	• 개정 • 삭제
제39조(보조금)	제35조(보조금)	○ “도지정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로 수정	• 자구수정
제40조(보조금의 반환)	(삭제)	○ 교부목적의 보조금 사용 등의 경우 보조금 교부 정지 또는 반환규정 폐지	• 삭제
제41조(손실 보상)	제36조(손실 보상)	○ 조문정리 ○ 도의 부담으로 인한 손실을 받은 자의 보상 규정 신설	• 개정 • 신설
(신설)	제37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 도지정문화재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지 않는 문화재의 관리·수리 경비 부담 및 보조	• 신설
제42조(준용)	제38조(준용)	○ 조문정리	• 개정
제3절 공개	(삭제)	○ 제3절 삭제	• 삭제
제43조(공개)	제39조(공개)	○ 공개규정	• 현행과 같음
제4절 조사	제3절 조사	○ 제4절을 제3절로 한다.	
제44조(부동산에 속하는 도지정문화재의 공개)	(삭제)	○ 부동산문화재 소유자의 공개의무 폐지	• 삭제
제45조(동산에 속하는 도지정문화재의 공개)	(삭제)	○ 동산문화재 소유자·관리자의 공개의무 폐지	• 삭제

현행	개정안	요지	비고
제46조(무형문화재의 공개)	(삭제)	○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공개의무 폐지	• 삭제
제47조(공개비용)	(삭제)	○ 도의 공개비용 부담 폐지	• 삭제
제48조(급여금및보상금)	(삭제)	○ 공개명령 폐지에 따른 급여금 등 지급제도 폐지)	• 삭제
제49조(관람료의 징수)	제40조(관람료의 징수)	○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 관리비용에 우선사용 ○ 관람료는 소유자(관리자)가 정함	• 현행과 같음
제4절 조사	제3절 조사	○ 제4절을 제3절로 개정	• 개정
제50조(관리상황의 보고)	(삭제)	○ 소유자 등의 문화재관리·수리 등 상황보고 의무 폐지	• 삭제
제51조(직권에 의한 조사)	제41조(직권에 의한 조사)	○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수정	• 자구수정
제52조(조사요청)	제42조(조사요청)	○ “소속공무원”을 “소속직원”으로 수정	• 자구수정
제53조(준용)	제43조(준용)	○ 조문정리	• 개정
제54조(권리의무의 승계)	제44조(권리의무의 승계)	○ 소유자 변동시 전소유권자의 권리의무 승계	• 현행과 같음
제55조(표창)	제45조(표창)	○ “도지정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로 수정	• 자구수정
(신설)	제46조(권한의 위임)	○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신설
제56조(문화재 보호단체의 지원·육성)	제47조(문화재 보호단체의 지원·육성)	○ 문화재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한 지원·육성	•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요지	비고
(신설)	제48조(청문)	○도지사, 시장·군수는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 취소시 청문을 하도록 규정	• 신설
(신설)	제49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	○비상시 도지사의 필요한 조치 명령	• 신설
(신설)	제50조(지원요청)	○도지사 또는 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의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 신설
제57조(시행규칙)	제51조(시행규칙)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현행과 같음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충청북도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라 한다)라 함은 도내에 있는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민족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재로 문화재청장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지 아니한 문화재중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재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2. 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3. 기념물 :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
 - 가. 사지·고분·패총·성지·궁지·요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 나. 경승지로서 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 다. 동물(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동굴·지질·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②이 조례에서 충청북도문화재자료(이하 “문화재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지사가 국가지정문화재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③이 조례에서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도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도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2장 문화재위원회

제4조(설치)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호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4.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5.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상변경 또는 도외 반출의 허가에 관한 사항
6.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이전 등에 관한 사항
7.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매입
8.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 및 장학생 대상자 심의
10. 기타 문화재관리에 관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계의 권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제4조에 규정한 사항을 문화재의 종별에 따라 분장하여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제2분과위원회·제3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업무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 20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수는 도지사가 정한다.

②전문위원은 사계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간사 등)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도지사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제1절 지 정

제 15조(도지정문화재의 지정) ①도지사는 제2조의 문화재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정문화재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에 의하여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때에는 당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보유자 외에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있는 때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제 16조(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의 보호상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 17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구역과 보호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하거나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조(지정서 등의 교부) ①도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를 지정한 때에는 그 소유자에게 당해 문화재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그 보유자에게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19조(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발생 시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또는 인정의 효력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 20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가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 포함)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적당치 않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③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보유자의 인정이 해제되며,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무형문화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문화재의 지정 및 인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해제의 효력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해제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중 개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때에는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가지정) ①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로서 그 지정 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로 가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지정된 문화재는 그 문화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통보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정은 그 가지정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조치가 없으면 그 가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제15조 내지 제18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보의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22조(문화재자료의 지정) ①문화재자료의 지정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문화재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②특히 도시화 과정에서 인멸될 우려가 있는 1945년 이전에 건립된 건조물과 오래되지 않은 건조물이라도 향후 문화재로 지정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을 확대 지정할 수 있다.

③문화재자료는 유형별로 나누지 아니하고 총괄하여 지정한다.

④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문화재자료 지정에 이를 준용한다.

제2절 관리 및 보호

제23조(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본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그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불명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공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함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도지정문화재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지정하고자 하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당해 관리단체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체를 지정한 때에는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⑥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5조(수리 등)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에 등록을 한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문화재수리업자로 하여금 수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기록의 작성·보존) ①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중 중요한 것에 대하여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허가사항) 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이나 그 보호구역 안에서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2. 도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
3. 도지정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다만, 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제28조(반출금지) ①도지정문화재와 가지정문화재는 도의 관할구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문화재의 전시 등 향토문화의 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지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을 허가 받은 자가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반출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의 도외 반출을 허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반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9조(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①도지사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당해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그 보유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전수교육) 도지사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 또는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 이수증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전수교육보조자) ①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수증을 교부 받은 자중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보조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수교육을 보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전수장학생) ①도지사는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종목에 해당하는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는 자중에서 그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추천을 받아 전수장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기타의 사유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전수실적이 불량한 때

④도지사는 전수장학생이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 하여야 한다.

⑤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전수교육기간·추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행정명령) ①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부적당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기타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3.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에 대한 제1호·제2호외의 필요한 조치

②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

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신고사항)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당해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 및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연서로 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때
2. 도지정문화재를 매도하고자 하거나 소유자를 변경한 때
3.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때
4. 도지정문화재의 소재지의 지명·지번·지목·면적 등을 변경한 때
5. 보관장소를 변경한 때
6. 도지정문화재가 멸실·도난 또는 훼손된 때
7. 제27조제1호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때
8. 제27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 변경 기타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때

제35조(보조금) ①도지사는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지정한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도지사가 도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시한 사항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기타 도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 또는 기록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문화재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감독할 수 있다.

③보조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또는 군수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토록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손실 보상)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

제37조(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지정문화재로서 그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그 관리·보호 또는 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준용) 제27조, 제28조,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호 내지 제4호·제6호 내지 제8호와 제36조의 규정은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및 보호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공개) 도지정문화재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0조(관람료의 징수) ①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관람료를 당해 문화재의 보호·관리를 위한 비용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3절 조 사

제40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도지정문화재의 현상·관리·수리 기타 환경보전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관계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재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측량·발굴·장애물의 제거 기타 조사상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뜨기 전 또는 해진 후에는 소유자·보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도가 그 손실을 보상한다.

제42조(조사요청) ①도지정문화재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요청에 의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장이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도지정문화재를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준용) 제41조, 제42조의 규정은 제15조, 제16조,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지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사 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 칙

제4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보호물·보호구역과 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에는 그 새 소유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행하는 명령·지시·기타 처분으로 인한 전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5조(표창)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표창하고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발견·신고한 매장문화재가 도지정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경우에 매장문화재를 발견·신고한 자
2.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가지정문화재의 멸실·도난·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3.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이외의 자로서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4. 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또는 가지정문화재를 관리·보호·공개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보호 또는 공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된 자

제46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육성) 도지사는 문화재보호·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48조(청문) 도지사, 시장·군수는 제27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그 허가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비상시의 문화재보호) ①도지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문화재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 및 가지정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점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문화재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매몰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②문화재의 소유자 등은 제1항의 조치 또는 명령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지원요청) 도지사는 제49조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